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년 1월 5일, 이만희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6년 1월 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3. 11.) 상정, 제안설
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14.) 상정, 축조
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4. 23.) 상정, 소위심
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만희 의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은 주민이 사업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의 성공 추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주민을 포함한 지역 공동체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역량강화가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는 이를 담당할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현장에서 지원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중 시·군 단위로 설치되어 주민들과 현장에서 접점이 가장 많은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업무 범위에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를 명시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장·군수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실행력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이정은 수석전문위원)

개정안은 기초지원기관이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이 교통·문화·교육·복지 등 농촌주민의 생활 전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사업참여를 활성화하고 정책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런데,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¹⁾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촌주민 등의 역량 강화를

1)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농촌 주민 등의 역량 강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주민,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훈련·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상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현행 농촌 관련 법률 체계 하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주민의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기초지원기관에 대해 특별히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공동체 역량강화”가 의미하는 바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교육·훈련 및 상담 등의 공동체 역량강화 지원”과 같은 방식으로 구체화하여 기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란 농촌 주민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비스를 말한다.

가. **일자리·소득 관련 서비스**

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고용·주거·교통·교육·보건의료·복지·환경·문화·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